

대법원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장폐색이 있는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대학병원 내과 교수 피고인 1의 지시로 내과 전공의 2년차인 피고인 2가 대장내시경을 위해 투여하는 장정결제를 감량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법으로 투여하며 별도로 배변양상을 관찰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장이 파열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1에 대해서는 수임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임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2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피해자 사망까지의 경위

- 피해자(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복부 X-ray와 CT 촬영 등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腸閉塞),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영상판독 소견을 받게 되자 대장암 치료 등을 위해 2016. 6. 25.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한 주치의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도·감독하에 피해자의 진료를 함께 담당하게 되었음

- 피고인 2는 전원 당일 09:00경, 피고인 1은 12:00경 회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대장암이 있는지 여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는 쉬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현재 뇌경색 증상이 있으며 혈액 응고방지제인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약을 끊고 기력이 회복되는지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지 가족들이 상의해서 일요일까지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
- 2016. 6. 26. 09:00경 피고인 2는 진찰을 하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으며 배변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익일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당시 집에 있던 피고인 1에게 전화로 위 사실과 피해자 및 가족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腸淨潔劑) 투여를 승인하였음. 이후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은 처방을 한 후 11:00경 퇴근하였음

오늘 저녁 피해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누어 투여하고, 다시 다음 날 05:00경 같은 요령으로 2L를 추가 투여하되, 장정결제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aspiration(사레 걸림) 되지 않도록 하라

- 피고인 2의 처방에 따라 2016. 6. 26. 20:00경부터 장정결제를 투여 받은 피해자는 장정결제 투여로 인한 가스와 장내 분변 등이 제대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한 채 대장 내 팽압 증가로 장벽이 얇어지면서 2016. 6. 27. 01:00경 이후 장천공이 발생, 장내 분변 등이 복강 내로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호흡곤란, 혈액 내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2016. 6. 27. 21:37경 사망에 이르렀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제1주의의무 위반(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과실)

- 피고인들은 X-ray와 CT 영상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서도 만연히 피해자가 장폐색 상태에 있지 않다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정결제를 투여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하였음

▣ 제2주의의무 위반(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장폐색이 의심된다는 영상판독 소견의 존재 및 그러함에도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실시하게 된 이유 및 그 필요성, 피해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가 아니라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검사시기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1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음

- 이에 피해자의 상태를 모른 채 진료기록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만을 인식한 당직의사들이 피해자와 그 자녀를 찾아가 그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동의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 1의 확실한 의사(컨펌)를 받기 전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그 뜻을 퇴근 후 집에서 전화로 전달받은 피고인 2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실시하게 된 이유 및 그 필요성, 피해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음

▣ 제3주의의무 위반(장정결제 투여 과정상의 과실)

-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장폐색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방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태 또는 소량의 장정결제를 점진적으로

투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체 변화인 설사의 유무나 횟수 및 배변량, 복부 팽창의 유무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정결제 투여 중단 등 이에 대처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전혀 처방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나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당직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전달 하지도 않았음

- 피고인 2가 작성한 처방에 따라 피고인들이 병원에 부재한 상황에서 위 병원 간호사 등은 장정결제 투여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 변화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통상인에 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위관(鼻胃管)을 통해 장정결제를 연속해서 총 2L 투여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변경 전 공소사실(제1, 2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것임]

- 피고인 1: 금고 10개월(피고인 1은 법정구속됨)
- 피고인 2: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원심 : 파기자판 ➡ 유죄

- 피고인 1: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이유 무죄
- 피고인 2: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유 무죄

● 원심의 유·무죄 판단 이유

- 제1주의의무 위반 - 무죄 : 대장 내시경 검사와 이를 위한 장정결제 투여의 대안으로서 장의 절개나 장내 물질의 배출 등 외과적 처치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하는 대신 경과 관찰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 변화를 예의주시한다고 하더라도 장폐색이 소실되거나 그 정도가 완화되어 안전한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가 가능하게 되리라는 사정 변경 가능성의 존재를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였음.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실시하기로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

는 때에 해당함

- 제2주의의무 위반 - **유죄** : 피고인들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상태와 이에 따른 장정결제 투여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설명하였다더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장정결제 투여 자체를 거부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투여 방법 대신 부분 장폐색 환자에게 적절한 보다 더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임
- 제3주의의무 위반 - **유죄** :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소량씩 장정결제를 투여하여, 부작용의 유무를 조심스럽게 확인한 후 만일 폐색이 더 진행되거나 흡인성 폐렴 등이 의심되면 이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장정결제를 투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부분 장폐색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 대한 쿨프랩 투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

-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하였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 전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임의사에게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

다. 판단 내용

- ▣ 피고인 1의 상고이유 관련

-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주된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 참조). 이때 그 의료행위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내지 자질과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의 경위 및 당시 상황, 그 의료행위가 전문적인 의료영역 및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위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해당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함(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함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까지 위임한 주된 지위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위임사실에도 불구하고 위임하는 의사와 위임받는 의사의 관계 및 지위, 위임하는 의료행위의 성격과 그 당시의 환자 상태 및 그에 대한 각자의 인식 내용, 위임받은 의사가 그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위임의 합리성

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피고인 2가 분담한 의료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 피고인 2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미흡하였거나 기존 경력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피고인 2에게 장정결 처방 및 그에 관한 설명을 위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피고인 2의 상고이유 관련

- 피고인 2의 제2주의의무, 제3주의의무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의료행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 설명의무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음